##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 재 혁 의원입니다.
-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